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섬지역 활동 법인·단체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93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섬지역 활동 법인·단체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0일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섬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섬지역의 해양과 바닷가에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에 의한 섬지역 해양폐기물 발생 감시활동이나 수거·정화 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섬지역 활동 법인·단체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가 해양폐기물 및 오염퇴적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후단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생략)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 ----- ----- ----- ----. <u>이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최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섬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섬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증가¹⁾하였으며, 섬지역이 가지는 자연적·경제적 가치 및 개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방문인구의 증가와 개발로 인해 섬지역의 해양과 바닷가에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을 수거·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재 해양수산부는 절대보전(140개)·준보전(550개) 무인도서 중 국·공유지(469개)의 약 20%에 해당하는 100여 개의 무인도서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해양쓰레기 실태 파악 곤란, 인력·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쓰레기의 정기적 수거·반출이 어려워 무인도서 및 소규모 유인도서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로 판단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해양폐기물 등의 감시·수거·정화 등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섬지역 내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1) 2023년 연안여객선 여객 수송 현황을 보면 일반인 9,999,415명(75.3%), 도서민 3,276,977명(24.7%)으로 총 13,268,392명인 상황임.

보이며, 이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 현행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민간에 의한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개정안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일을 규정²⁾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18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